

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9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01. 4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 마련과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(안 제2조)
- 나.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을 법령에 맞게 조정(안 제6조)
- 다. 고성군통합방위예규의 시행근거 마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 - 고성군 공고 제2009- 호(2009 .09. 11 ~2009 .10. 10)
 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- 나. 관계법령
 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합 의 : 관련실과 합의됨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5조제3항3호에서 “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”를 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”로 하며, 제 1 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
제5조제1호 중 “경비과장”을 “정보보안과장”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건설재난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“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”를 “군수 및 읍·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”로, 같은 조 제2항 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,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 내에 둔다”를 “각 지원본부는 군청 및 읍·면사무소에 두며, 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, 읍·면 본부장은 해당 읍·면장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건설·수송지원반”을 “산업·수송·장비지원반”으로 “통신지원반”을 “통신·전산지원반”으로 “보급지원반”을 “보급·급식지원반”으로 한다.

제8조(고성군통합방위예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지역 내 재난,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「고성군통합방위예규」를 적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명	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	제명	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	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제2조(심의사항)	법 제5조제3항3호에서 “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취약지역 대비책 2. 통제구역 설정 3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4. <신 설> 5. <신 설>	제2조(심의사항)	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1. <삭 제> 2. <삭 제> 3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 4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 및 지원대책 5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제5조(간사)	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1. 작전담당간사 : 육군제8358부대 작전장교, 고성경찰서 경비과장 2. (생 략) 3. 총무·민방위담당간사 : 행정과장 4. (생 략)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 한다.	제5조(간사)	① _____ _____ _____ 1. _____, _____정보보안과장 2. (현행과 같음) 3. _____ 건설재난과장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
제6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	① 고성군수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,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고성군청 내에 둔다. ③ ~ ⑤ (생 략)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, 인력동원지원반, 건설·수송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지원반, 보급지원반, 홍보지원반,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. ⑦ (생 략) <신 설>	제6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	① 군수 및 읍·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각 지원본부는 군청 및 읍·면사무소에 두며, 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, 읍·면본부장은 해당 읍·면장으로 한다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_____ _____산업·수송·장비지원반, _____ _____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_____ _____ ⑦ 현행과 같음	
		제8조(고성군통합방위에규)	지역내 재난, 테러, 침투, 국지도발,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「고성군통합방위에규」를 적용한다.	